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267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19세 미만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준수사항 신설	3
2. 준수사항 부과 규정 신설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신설

□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에 미성년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현행	개정안
6. (생략) ② · ③ (생략) 제39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u>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5호</u> 또는 <u>제6호</u>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5호 · 제6호 또는 제7호</u>----- ----- ----- -----.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으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및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1)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 · 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및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분석 등 검사준수 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²⁾

○ 2025년 미성년 대상 성폭력 재범 중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유인·접근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보호관찰대상자에서는 102건 중 36건(35.3%),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에서는 6건 중 3건(50%)으로 나타났다.

〈2025년 미성년자 대상 전기통신 이용 유인형 성폭력 재범 현황〉

(단위 : 건, 2025년 기준)

구분	미성년 대상 성폭력 재범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접근 후 성폭력 재범
보호관찰	102 (100%)	36 (35.3%)
전자감독	6* (100%)	3 (50%)

* 전자감독은 동종 재범 건수

자료 : 법무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2025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음.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정책뉴스, 25.4.30.)

- 현행법 하에서도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포괄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채팅앱 설치 여부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 분석 등에 응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실무상 부과되고 있으며³⁾, 디지털 분석 수검 준수사항 부과자는 전자감독의 경우 2022년 11명에서 2026년 3월 99명으로, 보호관찰의 경우 같은 기간 1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2026년 디지털분석 수검 준수사항 부과자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3.
전자감독	11	29	50	82	99
보호관찰	1	1	7	10	12

자료 : 법무부

- 개정안은 현재 포괄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는 온라인 접촉 제한 및 디지털 분석 수검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①‘본인이 소유한 PC, 휴대폰,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일체의 전자통신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정기적(최소 6개월에 1회)으로 채팅앱 설치 여부 및 여성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과학적 검사에 응할 것’ 혹은 ②‘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본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PC, 휴대폰,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통신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목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응할 것’과 같이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개념의 명확성과 디지털 분석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라는 표현은 그 적용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는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⁴⁾, SNS나 메신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상 채팅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의사소통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접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동일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는 경우, 게시글이나 댓글을 열람하는 경우 또는 19세 미만자가 먼저 연락하여 이에 응답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안 제39조제3항은 신설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준수사항은 실질적으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형성하게 됨.⁵⁾⁶⁾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되, ‘접근’의 의미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 분석 등 검사수인의무는 휴대전화·PC 등에 저장된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부착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와 연락한 제3자의 통신 및 개인정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 통화내역, SNS 콘텐츠 및 친구목록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수범자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그 위반에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의 내용과 모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755)

6)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잠정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56호, 시행 2027. 4. 22.)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27. 4. 22.>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저장되어 있고, SNS 등을 통해 연결된 제3자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수집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SNS 등으로 연결된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평온,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⁷⁾

○ 그럼에도 개정안은 “디지털 분석 등 검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대상이 되는 기기·정보의 범위, 검사기간·방법, 제3자 정보의 처리 및 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용·보관·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디지털 분석 수집의무는 그 불이행에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법은 전자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위치추적 수신자료에 대해서는 그 보존·사용·폐기 및 활용범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⁸⁾, 개정안은 위치정보보다 훨씬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II, p291

8)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차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분석에 대해서는 정보처리 및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균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안 제39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에게 실제로 금지된 방법으로 접근한 행위와, 보호관찰관의 검사범위·방법 등에 관한 이견 등으로 디지털 분석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의 성격 및 위험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개정안은 양자를 하나의 준수사항으로 묶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일반·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⁹⁾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하는 제재방식을 별도로 두고 있음.¹⁰⁾ 2020년 제39조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제재체계가 구분되어 적용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금지의무와 검사수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검사 불응의 경우에도 최초 위반부터 바로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보호관찰법상 다른 준수사항과 같이 단계적인 제재방식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 10. (생략)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10) **제39조(벌칙)**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사후 부과 및 집행 개시 전 부과 근거 신설

☐ 개정안은 보호관찰명령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새로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판결 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7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u>추가, 변경 또는 삭제</u>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부과,</u> <u>추가, 변경 또는 삭제</u> ----- -----.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 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u>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u>	제21조의8(준용규정) ----- ----- ----- ----- ----- <u>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u>

현행	개정안
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14조의3, 제15조----- ----- ----- ----- ----- ----- ----- -----.

□ 현행법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거나,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위 규정은 2020년 개정 당시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이라도 판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범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준수사항의

11)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¹²⁾, 당시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부칙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보호관찰명령 선고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재범위험성이 수형 중의 행형성적이나 보호관찰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준수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¹³⁾

문 의 처
02-6788-507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2104377

13) 최근에도 부칙명령 등 선고 당시에는 부과하지 않은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 해당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20로52 결정]